

국적변경은 기본적 인권이다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중국적자들의 병역 면탈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오다가 급기야 국적과 병역을 연관시키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법리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논리적 차원에서 살펴보자.

개정된 국적법은 국적 선택권이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다분히 감정적인 법이다. 즉 이 법의 문제는 이중국적의 남자들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자유로운 국적 선택에 힘든 조건을 하나 단 것이다. 이런 개정안의 취지는 이중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자로 남아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조건으로 국적 포기를 허용하는 이같은 발상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비관용적이다. 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병역의무를 곧 외국인이 될 사람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것일까. 대

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기 위해 이중국적자를 대한민국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배양하기 위함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안다. 한마디로 이 국적법은 완전히 외국인이 될 사람을 ‘옛 먹이’는 법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도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민족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름 아니다. 다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꼭 그러한 보복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민족이었던가. 그리고 그토록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그런 식의 보복성 폭력의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흔히 사람들은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의무는 회피하고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우리 나라에 남아 권리만 누리며 양체족이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개정된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채 외국인이 된 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기피한 외국인에게는 완전한 재외동포대우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국인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건이 기억난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외국인이 된 연예인을 인천 공항에서 입국 거절한 사건이 있다. 이중국적자였던 연예인 유승준의 경우인데,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국적과 병역 문제에 얼마나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정된 국적법은 이같은 이중국적자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즉 그는 국적 선택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는 안한채 외국시민이 되어서는 해외동포 자격으로 이중국적 효과의 혜택을 누리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과연 국적 선택의 전까지 이중국적자들이 혜택만 누린다는

비난은 올바른 지적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적 포기 절차를 밟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되기까지 해당자들은 거의 미성년 자들이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권리만 누렸으니 이제 의무를 이행하라고 맨 먼저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중국적자들이라도 그들이 이 땅위에서 누린 권리와 혜택은 바로 그들의 부모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부모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로 그 자녀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 자녀들이 교육,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들의 납세로 가능한 것이지, 국가의 무료 서비스 덕분은 아니다. 따라서 이중국적 미성년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만큼은 하고 나서 국적을 포기하라는 것은 억지다. 미국에서도 부모가 납세의무 등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도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등록금 감액의 혜택이 없는 주가 있다.

또한 병역 기피한 동포들을 철저히 외국인 취급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 이런 발상에는 외국인 차별 의식이 담겨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이나 사회보장면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규약이다.

국적 변경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두 개의 국적을 갖든지, 한 개의 국적만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선택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제 삼자나 국가가 그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곧 이탈하게 될 국적의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외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시민이 부당하게 다른 나라 병역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중국적자 문제는 우리 국적법에 내재된 모순이기도 하다. 현행 우리 국적법은 이중 국적 인정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성년때까지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다가 성인이 될 무렵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한다. 더 이상 이중국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개인적 차원의 ‘국적 포기’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국적 박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국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 국방의 의무까지 다 하고도 국적을 박탈당하는 꼴이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갔다오면 시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받기도 하는 실질적인 국적 취득의 혜택이 있다. 미국에서는 병역이 시민으로서 수행하는 애국심의 표현내지 척도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을 무슨 형벌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국적법은 병역 이행을 해도 국적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국적을 박탈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이중국적자들에게 병역 의무는 인센티브제가 아닌 네거티브 제도로서 작동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완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중국적자들에게 하나만의 국적을 강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중국적자들의 병역기피가 문제가 아니라, 이중국적을 완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법이 문제다.

또한 이렇게 애국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병역과 국적의 관계를 억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국적법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이런 잘못된 틀에서 이중국적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들은 모두 예비 병역 기피자들이고 애국심이 없는 국적 포기자로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다.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시민이 되려고 한다는 사회적 비난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만약 대한민국이 모병제를 택하고, 미국이 개병제를 도입하여 병역의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가정할 때, 이중국적자들이 거의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고 할까. 개인에 따라 선택은 다르겠지만 국적 선택의 이유로서 병역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같이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등 선진국가의 발전된 여러 측면들이 국적 선택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교육이나 자아 실현의 기회가 더 많은 나라로 판단하여 미국 국적을 택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이중국적자가 단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한다고 보는 관점에는 다분히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측면이 있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중국적자들의 국적 이탈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쯤으로 인식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보다는 미국 국적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진지한 반성 없이 마녀사냥에만 열을 올린다. 국적 포기자들을 비난을 하고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규모 국적이탈을 막는 것이 목적인가. 이런 방식으로 국적 이탈을 막으려는 시도는 마치 북한 사회에서 탈북자를 막으려는 조치들을 연상시킨다. 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들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억압하고 있는가.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북한 공동체를 배신하고 북한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듯이, 남한에서는 원정출산자, 이중국적자들을 남한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인식하

고 있는 것 같다.

대규모 국적 이탈 현상이 우리나라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민주적 군대, 후진 정치, 부동산 투기, 공교육 붕괴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적과 병역 문제를 연결시키는 사고에 감추어진 또 한가지의 무책임한 태도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군대문화의 후진성과 비민주성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는 의지의 부족이다. 왜 우리 국민들이 군입대 기피증과 공포증을 갖고 있는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구타, 자살, 등 각종 사고들과 비인간적, 비민주적 행태들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군대의 민주화만 이뤄져도 우리 사회에 군대 기피증세는 많이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대체 군복무나 모병제 등 획기적인 군제도 개혁을 모색한다면 병역은 의무나 형벌이 아닌 애국심 발현과 자아실현의 기회로 인식될 것이다. 의사, 법관 등에 계만 허용되고 있는 대체 군복무의 형식을 전체 군입대 희망자들에게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군인력은 남아 돈다고 하지 않는다. 이제 군대의 물리적 숫자의 증가보다는 첨단무기화 등으로 군을 정예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개정된 국적법은 해외동포들을 활용해야 하는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 법이다. 해외동포들을 가능한 한 포용하고 이 자원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현 국적법은 오히려 동포를 배척하고 차별하고 있다. 이 나라 국적을 포기당하고 선진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기분 좋게 떠나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도 우리 동포이고 그들이 언젠가 우리 민

족과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일부 암체족이 있다고 해서 전체 해외동포 정책을 부정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 세계화 시대에 해외동포 정책은 형평성 있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로 재미, 재일 동포들에게만 치중되어 있는 동포의 자격도 재중, 재러 동포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중국적자, 해외동포 등 우리 민족의 일부를 적대시하고 배척하기 보다 이들을 보듬어 안고 가는 대승적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족과 다국적자를 차별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쇠퇴시킬 필요가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모자란 나라일수록 민족 통합적인 정책과 함께 이민족 동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순혈주의 국적법은 국적 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헤쳐 나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국적 경쟁의 시대에 개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방적인 국적법이 필요하다. .

올해 통과된 국적법 개정과 이중국적자의 국적 포기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과 자긍심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적에 있어서 병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애국심의 표현인가 형벌의 의무인가.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 국적의 경쟁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중국적자와 해외동포 그리고 이민족에 대한 정책 등을 생각해 보게 한 기회였다.

이중국적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다음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보복에 가까운 응징한 대응방식이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로 이중국적자를 문제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권력형 병역 기피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정

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나 그 자녀들의 경우 병역 기피 의혹이 많다. 우리 사회가 병역 의무 앞에 평등하려면 우선 그런 불평등을 야기하고 특권과 특혜만 누리려는 우리 지도층 인사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야 한다.

이번 국적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병역 기피 문제, 국적법의 문제, 군대의 문제점들은 놔둔채 이중국적자들만 비판의 타겟이 된 듯하다. 그 은폐와 무책임의 허위를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 반성을 해야 할 때다.

언젠가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어하는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자랑스런 국가와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국적법 내용을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